

논문 2014-1-1

저작권 감정비용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방향성 고찰

김시열*

Analysis on How to Improve Copyright Appraisal Fee Estimation Methods in the Future

Si-Yeol,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활용하고 있는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한 개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개선 노력이 갖는 한계를 운영주체에 대한 잘못된 고려에서 찾고 이를 온전히 전제하여야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오랜기간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산정방식이 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changes tha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appraisal fee estimation method as well as the other factors in line with it. This study finds the main fault, with providers of appraisal services, for limiting the efforts made so far to improve appraisal and concludes that plans for improvement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only when service providers acknowledge such. This study also aims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s factors in the appraisal fee estimation method, particularly as the current formula is out of date and fails to reflect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its conception.

한글키워드 : 저작권 감정제도, 감정비용, 감정비용 산정방식, 감정인력

I. 서 론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¹⁾은 저작권 감정에 대

한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을 위한 수수료, 즉 감정비용은 분쟁의 발생 시 당사자가 분쟁의 신속

1) 저작권법 제119조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email: sykimlaw@hanmail.net)
접수일자: 2014.5.19 수정완료: 2014.6.20

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²⁾ 분쟁해결을 통하여 얻는 편익이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감정을 굳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직적 측면에서 감정비용은 운영기관의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감정비용 산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으로서의 감정인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감정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감정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개선방안을 요구한 사례³⁾ 및 감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인원의 36%만이 감정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⁴⁾ 등을 볼 때 감정비용에 대한 적정성, 특히 산정방식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정비용은 감정의 개시, 감정수행의 질(質), 감정범위의 해석 등 다양한 요소로 기능하므로 수행 예정의 감정사건에 대한 적절한 감정비용의 산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감정비용 산정을 위한 노력의 경과를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현황 분석

가. 현행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기준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업무 처리규정」에서 감정비용 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 제3조에서는 감정비용을 ‘감정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감정비와 감정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그 외 동 규정 제14조는 예상감정비용 미예납 시 감정의 직권종결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며, 제15조는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예납 근거의 규정, 제16조는 감정비용의 산정 방식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감정비용은 직접감정비와 감정수수료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직접감정비는 기본감정비와 실비의 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정비만을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기본감정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①감정업무 처리규정상 기본감정비 산정표를 적용한 계산, ②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당해연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중 특급기술자 일일인건비에 순수 감정일수를 곱하여 계산, ③기획재정부 전문가가격조사 등록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의 학술연구용역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 ④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 ⑤해당 분야 전문가의 일일인건비에 순수감정일수를 곱하여 계산(일일인건비의 적정함을 증빙 필수)하는 방식 중 택하도록 한정한다.

2)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비용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2010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수수료 산정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사례.

4) 권기태, “감정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제안”, 「SW 저작물 감정에 관한 기본적 고찰 : 2011년도 감정위킹그룹 최종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89면.

실비는 감정에 직접 소요되는 국내여비, 자료비, 인쇄비, 장비사용료, 실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감정수수료는 기본감정비의 1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1. 기본감정비 산정표(규정 별표1) |

단계	개발비 또는 감정가	요율(%)	기본감정비
1단계	3천만원 까지	5.00	1,500천 원
2단계	5천만원 까지	4.00	2,000천 원
3단계	1억 원 까지	3.00	3,000천 원
4단계	2억 원 까지	2.00	4,000천 원
5단계	5억 원 까지	1.30	6,500천 원
6단계	10억 원 까지	0.90	9,000천 원
7단계	20억 원 까지	0.60	12,000천 원
8단계	50억 원 까지	0.40	20,000천 원
9단계	100억 원 까지	0.27	27,000천 원
10단계	100억 원 초과	0.27	해당금액

나. 감정비용 산정방식 개선 노력 경과

저작권 감정에 관한 감정비용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10여년 전 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초 저작권 감정제도가 도입된 당시 사용되던 감정비용 산정방식은 기능점수와 핵심함수점수의 합에 프로시저 수를 곱한 값을 적용하였다. 이때 기능점수는 기능평가요소별 난이도와 기술적 복잡도의 곱이고, 기능평가요소별 난이도는 가중치와 기능수의 곱의 합, 기술적 복잡도는 성능특성별 총영향도와 프로그램형태별 보정계수의 곱에 개발언어별 보정계수를 더한 값이다. 핵심함수점수는 총영향도와 기술적 복잡도 및 핵심함수의 수의 곱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처음의 감정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는 2002년의 “프로그램 복제도 감정 기법 및 감정비 산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감정을 위한 사전조사, 준비단계, 보고서작성 및 보정 등 일련의 공통적 수행에 소요되는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의 규모나 난이도에 무관하게 실제 감정업무의 사전·사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정기본비’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비용 산출방식으로 감정기본비(M/M)와 총프로그램감정비(프로그램감정비⁵⁾ × 감정건수)의 합을 제시하였다.

2003년의 “합리적 감정비 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능특별영향도의 기능점수 및 핵심함수점수 계산에 반복활용되어 기능점수 및 핵심함수 구분 모호, 프로시저와 핵심함수의 구분 불명확, 단위규모당 인건비 단가의 반영 부존재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율표를 활용하여 감정비용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램 일부에 대한 감정인 경우 및 요율표 적용이 적절치 않는 경우에는 SW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2002년 및 2003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의 감정비용 산정방식이 도출되었다. 현행 감정비용 산정방식은 초기 산정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2004년 1월 30일 「프로그램감정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반영되어 적용되기 시작

5) 기능점수[기능평가요소별 난이도(기능수×가중치합) × 기술적 복잡도(성능특성별 총영향도×프로그램 형태별 보정계수×개발언어별 보정계수)] × 모듈수.

하였다. 본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의 통합 이후인 2009년 9월 1일 「감정업무처리규정」으로 승계되었다가, 2010년 11월 9일 실비판상비를 실비로, SW노임단가기준을 대체할 타 인건비기준의 추가 반영, 실비의 범위 확대 등 일부 수정되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의 수정이 근본적인 방식의 개선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2009년 일반저작물 감정의 시행, 감정대상물의 확대, 감정신청원인의 다양화(저작권 침해 외 영업비밀, 계약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현행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현행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낮은 점이다. 활용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감정비용 산정을 위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분석이 수행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특히 인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2014년 6월 기준으로 SW분야 1명, 일반분야 1명으로 매우 부족⁶⁾하며 인력구성 역시 분석을 수행할 전문인력보다는 행정인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사전분석 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실무적으로는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감정비용이 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산정과 같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전분석

이 수행되지 않으면 ‘대략적인’ 감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기술적 및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적정 감정비용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의 기준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노임단가 기준을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적용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실제적인 감정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노임단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감정이 종료된 이후에야 정확한 감정비용 산정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대략의 예상일수를 적용한 예상감정비용과 최종감정비용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예상일수 역시 명확한 분석을 통한 도출이 매우 어렵다. 현재 이용하는 산정방식 자체가 10여 년 전 도입된 계산방식으로서 감정에 관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점차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형태 및 대상의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수행과 수행될 감정의 가치가 일치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⁷⁾

더군다나 소프트웨어의 복제도 감정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지금의 산정방식이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복제도 뿐만 아니라 완성도 및 개발비산정 감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괴리를 깊게 하기도 한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기술적·환경적 변화 미수용, 사전분석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미확보 등으로 현재 운영되

7) 침해법익의 다양화로 인한 감정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감정을 수행하는 인적/물적 환경의 변화, 감정대상의 기술적 변화 등에 대한 반영이 지난 10여 년 간 부존재하였다.

6) 이 역시 정규직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 있는 감정비용 산정방식이 불완전한하게 활용되고, 이로 인해서 주관적 경험 중심의 감정비용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감정제도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저하시킴으로 상당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서 감정비용 산정방식에 관한 정책적 방향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4. 감정비용 산정방식 개선의 방향성

가. 기술적·환경적 변화를 반영

지난 10여 년 간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유지되어 온 현행의 감정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때 그 간의 기술적 또는 환경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유형에 따른 감정비용 산정방식 구조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 감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과 일반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정전문위원회가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프로세스 등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감정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일한 기준에 세부적인 적용기준만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원화된 산정방식은 통일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기 감정대상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현행의 일원적 제도 운영 자체도 고민을 통한 정책적 결단이 아닌 소위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감정대상의 유형별로 각각의 상이한 산정방식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세부적용에 차이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각각 상이한 산정방식을 둔다면, 저작물 유형을 대분류 범위에서 선정하여 각각의 시장의 특성, 저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정방식을 도출할 것이 필요하다. 대분류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르면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현행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 원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인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소프트웨어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으로는, 감정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면 가능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분석적인 방법에 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감정비용이 의뢰인의 감정수행에 대한 결정요소, 감정의 투입노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감정비용의 수준은 감정대상을 100%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살펴본 감정비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정도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즉, 감정대상의 특성을 100% 반영하여 무언가 복잡하고 선택요소가 많은 감정비용 산정방식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감정비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하여 감정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노력을 실제 감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수준의 감정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차등적 정책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종 금

액을 적용하는 방식과 정해진 요소 값을 정형화하여 담당자가 그 수준을 직관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요율방식의 유지 여부 및 적절한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실 요율 방식은 다른 감정의 분야에서도 상당히 활용되는 것으로서 그 활용성 자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행의 규정체계에서는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SW 노임단가기준을 이용한 기본감정비 산정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요율방식을 적용하여 감정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근거한다. 이에 요율방식을 계속 제1의 산정방식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임단가기준의 방식과 요율적용방식이 뒤섞인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 감정제도의 경우 감정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최근 있어오고 있는데, 평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종가제를 적용하던 기존의 방식이 감정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감정평가에 투입된 노력, 시간, 난이도, 산출물의 완성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량제 방식을 2013년 1월 1일부터 일부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셋째, 정확한 예상 감정소요기간의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의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이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 기간이 감정비용의 수준을 결정하

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를 담당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여 대략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실제 기간에 비추어 조율하고 있지도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히 부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정 방식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 감정비용과 실제 시장적 상황에 비추어 도출되어야 하는 감정비용과의 괴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초에 시장상황에 맞는 감정비용을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산정하고 역으로 계산방식을 그 금액에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소요기간 계산방식의 문제는 감정비용 산정 방식 자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현실적 적응가능성 확보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기존의 감정비용 산정방식이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현행의 산정방식이 정립된 이후에도 온전하게 이를 이용하여 감정비용을 산정한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산요소를 적용하고 각 요소값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한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가치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계산 및 적용하여 그 가치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고 그 위치를 명확히 하는 관점인 것이다.

반면 감정제도의 운영 및 감정비용을 산정하는 주체는 행정가적 측면에서 이를 접근한다. 즉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절대적 가치와 상이하더라도 업무가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가

치, 즉 적정한 수준의 감정비용을 제시하여 분쟁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이 그 비용에 따라 감정을 수행한다면 그것으로 비용에 대한 고민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의 고려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점이 매우 크다.

이에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산정방식’이 아닌 ‘최적의 산정방식’의 도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결과에도 실무에서의 쉬운 적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또한 감정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위해 현재 상황이 그에 맞추어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가정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시한 계산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실제 환경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방식은 사용할 수 없는 장식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인력 등의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감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전분석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5. 결 론

적정한 감정비용의 산정은 감정의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감정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들 역시 자신이 지불한 감정비용의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내역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모델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기간 동안 감정에 대한 범위, 기술, 내용, 역량 등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감정비용의 산정방식은 변화가 없음에 따라 이의 적절한 방식으로의 개선은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다.

다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왜 정답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라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방안을 도출하였지만 이를 운영할 주체를 달리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의 개선노력이 그 동안 안착되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감정비용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최고의 방식이 아닌 최적의 방식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주체가 이를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 이용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 즉 현실적 합리성을 주요한 전제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기존의 다양한 산정방식에 대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이론적 측면의 논의라고 제기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기태, “감정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제안”, 「SW저작권물 감정에 관한 기본적 고찰 : 2011년도 감정워킹그룹 최종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 [2]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안 연구」, 2013
- [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민사소송Ⅲ」, 2005
- [4] 조맹섭, 「프로그램 복제도 감정기법 및 감정비 산출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 [5] 이일구, 「합리적인 감정비 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저 자 소 개



김 시 열

2012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7-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現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주관심분야 : 실질적유사성, 저작권침해 등>